

4과목 수출입통관

01. 관세의 성격

- 조세적인 성격
 - 관세는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관세는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 관세징수권의 주체는 국가이다.
 - 관세는 법률·조약에 의거 징수한다.
 - 관세는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 소비세적인 성격
 - 관세의 궁극적인 대상은 소비자이다.
 - 관세는 생활필수품보다는 사치품에 중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 관세는 전가된다.
- 특수한 성격
 - 관세는 무역장벽이 된다.
 -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한다.
 - 관세는 관세영역을 전제로 부과한다.
 - 관세는 대물세이며, 수시세이다.

02. 관세의 기능

- 소비억제
- 수출의 촉진 및 교역조건 개선
- 수입의 대체 및 국제수지의 개선
- 국내산업의 보호
- 재정수입의 확보

03. 관세법 적용의 원칙

- 관세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신의성실
- 세관공무원재량의 한계

04. 신고서류의 보관기간

-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함
- (수입 관련 서류 5년, 수출·반송 관련 서류 3년,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등은 2년)

05. 관세의 납부기한

- 납세신고를 한 경우 :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 납부고지를 한 경우 :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06. 월별납부

-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함)

07.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발생시 1년을 넘지 아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08. 과세의 4대 요건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관세를 및 과세표준

09. 과세물건 과세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물 수입물품이 과세물건임.

10. 납세의무자의 종류

-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특별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보증인, 제2차 납세의무자,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이 있음.

11.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 일반적인 경우: 5년
- 부정한 행위(관세포탈 등)를 한 경우: 10년

12.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5억원 이상의 관세 : 10년, 그 이외의 관세 : 5년

13.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5년

14. 통관의 요건

- 허가, 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 세관장 확인대상 수입물품 : 약사법 해당 물품 중 의약품 및 한약재 등
 - 세관장 확인대상 수출물품 : 마약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등
- 의무이행의 요구
 -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문서로서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통관표지
 - 관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음 (대상 3가지)

15. 통관후 유통이력신고

- 수입자와 유통업자(소매업자 제외)는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함.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6. 원산지증명서의 요건

- 원산지국가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국가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 이외에 3가지

17.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물품

-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성질·형상 또는 그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 우편물(수입신고 대상 우편물 제외)
- 과세가격(종량제의 경우에는 이를 법 제155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 기타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18. 수입신고의 생략 물품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 물품 등

19. 신고서에 의한 간이신고(수입) 물품

- 국내 거주자가 취득하는 해당 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 물품 등
- 해당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건품
- 설계도 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급수단

20. 신고인: 화주(수출은 제조자 포함) 또는 관세사등

21. 수입 / 반송신고의 기한 및 가산세 징수

- 수입 또는 반송물품을 보세구역(보세구역 외 장치장소 포함) 반입일(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여야 함. 미신고 시 과세가격의 2%의 범위에서 가산세 징수(500만원 한도)

22. 여행자나 승무원 휴대품 미신고시

-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0(단,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되,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

23. 원양수산물 신고

-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포한 수산물을 현지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출 후 대금결제 전까지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 Cargo Receipt, B/L, Final(Fish) Settlement]가 첨부된 수출실적보고서(수출신고서 양식 사용)를 한국원양산업협회를 경유하여 서울세관장에게 신고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24. 잠정수랑 / 가격 수출신고 대상물품

- 가스, 액체, 전기, HS 제50류 내지 제60류 중 직물 및 편물, HS 제71류부터 제83류까지의 귀금속 및 비금속제 물품 등은, 적재완료일부터 수량의 경우 5일, 금액의 경우 18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제공급한 수량 등을 신고할 수 있음.

25. 목록통관 대상물품

- 유해 및 유골,
-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
- 외국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반출하는 물품,
-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 카탈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자가사용물품

26.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30일 이내 적재

-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함
- 1년의 범위에서 횡수에 관계없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적재기간 연장을 할 수 있음

27. 보세구역의 종류

- 지정보세구역(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및 종합보세구역

28. 보세구역의 장치원칙

-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신고를 하고자 하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에 장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9. 보세구역의 장치물품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 우편물품
- 압수물품
- 채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 검역물품

30. 보세구역의 장치허가

-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 한 물품을 보세구역 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31. 물품의 반출입신고

-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시험에 나오는 핵/심/체/크

2023년 11월 11일(토) 시험대비

원산지관리사

이패스코리아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원산지관리사 시험정보 ❖

▶ 시 험 시 간 : 11월 11일(토) 11:00 ~ 13:00

▶ 합격자발표 : 12월 8일(금)

2023 무역자격증 대비반

▶ 환승 & 재도전 60%할인 과정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외환전문역2종, 국무사, 무역영어, 보세사 과정 수강 시 **120일 수강보장 & 불합격연장**

▶ 관세사 연계 50% 할인 EVENT

이패스 관세사 유료수강생의 경우! **무역 전과정 정가대비 50% 할인&불합격시 연장**

▶ 무역 ALL-PASS EVENT

국무사 + 무역영어 + 유통2급 + 물류관리사 과정을 몽땅 수강! 수강기간 2년! 취업3종강의 무료지원

[교육과정문의] 이패스코리아 1600 - 0522

www.epasskorea.com

1과목 FTA협정 및 법령

01. 지역경제통합 순서

자유무역협정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동맹 ⇨ 완전한 경제통합

02. WTO와 FTA비교

- 공동점 : 회원국 경제발전 및 경제적 후생 증대의 목표 동일함. 다른 회원국 경제에도 유리한 여건이 조성됨.
- 차이점 : WTO ⇨ 다자주의, FTA ⇨ 양자주의

03. FTA경제적 효과

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투자효과, 무역굴절효과, 우회수입방지효과

04. 발효된 FTA협정(발효순)

칠레(04.4.1), 싱가포르(06.3.2), EFTA(06.9.1), 아세안(07.6.1), 인도(10.1.1), EU(11.7.1), 페루(11.8.1), 미국(12.3.15), 터키(튀르키예)(13.5.1), 호주(14.12.12), 캐나다(15.1.1), 중국(15.12.20), 뉴질랜드(15.12.20), 베트남(15.12.20), 콜롬비아(16.7.15), 중미(19.10.1), 영국(21.1.1), RCEP(22.2.1), 이스라엘(22.12.01), 캄보디아(22.12.01), 인도네시아(23.01.01)

05.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아세안, 인도네시아 : 발급일부터 1년(잘못 발급된 C/O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C/O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C/O의 발급일부터 1년), 칠레 : 서명일부터 2년, 페루 : 서명일부터 1년(C/O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관할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 미국 : 서명일부터 4년, 콜롬비아 : 서명일부터 1년, 호주 :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2년, 캐나다 : 서명일부터 2년, 뉴질랜드 : 서명일부터 2년, 베트남 :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잘못 발급된 C/O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C/O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C/O의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 싱가포르, 인도, 터키, 중국 : 발급일부터 1년, EFTA, EU, 영국, 중미: 서명일부터 1년, RCEP :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 이스라엘: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2개월

06. 다른 법률과의 관계 협정 > FTA관세특례법 > 관세법

07. 상호대응세율 한-아세안 FTA협정에만 규정됨.

08.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TRQ)

- 추천방식 : 추천서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함. 단,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음
- 선착순 방식 : 수입신고순으로 선착순 배정함. EU(납치), 미국(납치, 명태, 민어), 뉴질랜드(홍합), 중국(눈다랑어, 소라, 해파리)

09.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 협정세율 < 관세법상 적용세율 ⇨ 협정세율
- 협정세율 ≥ 관세법상 적용세율 ⇨ 관세법상 적용세율(단,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적용세율이 같을 때에는 협정관세 적용 가능)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관세, 조정관세(공중도덕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세율보다 우선 적용

10.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 사전 신청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C/O는 갖추고 있으면 됨).
 - 해당 물품의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의 상호, 성명, 주소 등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
 -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함. (C/O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함)
 - 사후심사원칙(예외적으로 사전심사하는 경우 2가지가 있음)
- 사후 신청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 품목분류 오류에 따라 관세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45일)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함.
 - 경정청구(2개월 이내 통지), 관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함.

11.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 면제물품

- 과세가격이 미화 1달러(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단,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 제외)
- 동종동질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 또는 수입거래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 다만, 사전심사시의 조건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상표, 생산국명 또는 제조자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물품

12.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

- 수출물품 :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 및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함. (세관장은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
- 수입물품 :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거나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통지받기 전에 세액정정, 수정신고 등을 하여야 함.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13. 원산지증빙 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 보관
 -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이를 보관해야 함
 - 수입자 :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 수출자 및 생산자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다만, 중국은 3년)

2) 제출

- 서류제출자 :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계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생산자 포함)/재료공급자 및 생산자(계약상대국의 거주자 포함)/해당 물품의 거래, 유통, 운송, 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 제출기한 : 20일 기간으로서 페루 90일, 그 이외의 경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연기신청 : 서면조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1회 한하여 30일 연장)
- C/O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등은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함.
-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4. 원산지조사 대상자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계약상대국 거주자 포함)/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재료공급자 및 재료생산자(계약상대국 거주자 포함)/해당 물품의 거래, 유통, 운송, 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15. 원산지조사 회신기간

-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요청으로 인한 우리나라 관세당국의 통지기간
 - EFTA ⇨ 조사 요청일부터 15개월
 - 아세안 ⇨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6개월 연장 가능함)
 - 인도 ⇨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6개월의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EU ⇨ 조사요청일부터 10개월
 - 페루 ⇨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0일
 - 터키(튀르키예) ⇨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 콜롬비아 ⇨ 조사 요청일부터 150일
 - 베트남 ⇨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 중국 ⇨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 중미 ⇨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 영국 ⇨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 RCEP ⇨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 인도네시아 ⇨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단,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 요청 시 요청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정보 제공)
 - 이스라엘 ⇨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단, 이스라엘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 요청 시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보 제공)
 - 캄보디아 ⇨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 ※ 미국(섬유 관련 물품) ⇨ 조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고, 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미합중국 관세당국이 요청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
-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계약상대국에 요청한 경우의 계약상대국의 회신기간
 - EFTA ⇨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5개월
 - 아세안 ⇨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인도 ⇨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EU ⇨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 페루 ⇨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0일
 - 미국 ⇨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2개월
 - 터키(튀르키예) ⇨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 콜롬비아 ⇨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50일
 - 호주 ⇨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30일(연장요청 시 3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베트남 ⇨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 중국 ⇨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 중미 ⇨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 영국 ⇨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 RCEP ⇨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 인도네시아 ⇨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추가 정보나 서류 요청 시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4개월의 범위에서 회신기간 연장 가능)
 - 이스라엘 ⇨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0개월(추가 정보나 서류 요청 시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90일의 범위에서 회신기간 연장 가능)
 - 캄보디아 ⇨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16.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와 관련된 내용

- 수입자 조사 후 계약상대국 수출자 등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 수입자 조사후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해야 함
- 계약상대국 수출자 등의 조사연기 신청 :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기신청하여야 하고, 연기기간은 1회에 한하여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 조사의 연기를 승인할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대상자와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지하여야 함(단,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
- 계약상대국 수출자 등에 대하여 조사하러던 사전통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는 현지조사할 수 없음

17. 원산지조사결과의 통지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단, 아세안, 인도, 베트남, 중국은 현지 방문일부터 6개월 이내)

18. 원산지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음

19.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에 관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발급받았거나 탈세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또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세관장이 수집한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수입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과목 품목분류실무

01 HS 품목분류표

- (1) HS 해설서 및 HS 품목분류 의견서 :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대부분 이를 수용한다.
- (2) 품목분류 기준에관한 고시 :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세청장이 고시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법적 효력이 있다.

02. 통칙

[순차적 적용]

통칙 1

-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표제의 성격을 나타낸 것으로 참조의 편의상 설정된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기 때문에 품목 분류에 있어서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그에 따른 상품을 분류하지 않는다.
-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호의 용어 및 관련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 (1) 각호의 용어(즉 각호의 본문을 말함 : the term of the headings)·부 및 류의 주 등은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2) 특정 물품이 실사 표제의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호의 본문이나 주에서 명시하고 있으면 표제의 표현과는 상관없이 호의 본문이나 주에 따라 분류한다는 것이다.
- 「이러한 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재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통칙 2

- 가) -1. 불안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
- 〈본질적인 특성〉
- ① 형태 : 원전 또는 완성품의 주 형태를 갖춘 것
- ② 용도 : 다른 물품에 전용될 수 없는 것
- ③ 기능 : 원전 또는 완성품의 주 기능을 가진 것
2. 미조립 또는 분해된 물품
- 원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분류

- 나) -1. 재료 또는 물질
- ① 순수한 것 : 순수한 당해 재료 또는 물질
- ② 혼합물(Mixture) : 다른 재료 또는 물질과의 혼합물
- ③ 복합물(combinations) : 다른 재료 또는 물질과의 복합물
2. 물 품
- ① 순수한 재료로 된 물품 : 당해 재료만으로 된 물품
- ② 복합재료로 된 물품 : 당해 재료의 일부로 구성된 물품
3.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

통칙 3

[소매용 세트물품]

- 일련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협의의 표현호 우선

- ① 물품명(Name)으로 계기되어 있는 것은 종류(Class)로 계기되어 있는 것보다 더 협의의 표현이다.
- ② 물품확인(identification)이 쉽도록 표현한 품명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협의의 표현이다. 물품을 확인하는 것은 감정에 의하여, 감정하기 쉽도록 표현한 품명은 감정결과가 나타나 있는 품명이다. 따라서 성분명으로 표현된 품명은 협의의 표현이 된다.

- ↓
-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나 소매용 세트물품에 대해서 둘 이상의 호가 구성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
- ↓
-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
- ↓

나) 본 통칙은 「본질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에 따른 분류이다.

이 규정은 통칙3 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혼합물·복합물 및 소매용 세트물품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물성·용적·품질·수량·중량·가격 그리고 용도에 따른 역할 등이 있으며, 이들은 물품에 따라 그 적용 요소가 각각 다르다.

다) 최종호에 분류

- ↓

통칙 4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에 분류

[보조적 적용]

통칙 5

가) 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제도기케이스·목걸이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

- ①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도되어 있는 것
- ②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한 한 것
- ③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것
- ④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것

↓

당해물품과 함께 분류

↓

- ① 위의 경우에 맞지 않은 것
- ② 용기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것 → 따로 분류

나) 포장재료와 포장용기

- 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될 것
- ② 그 내용물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일 것

↓

당해물품과 함께 분류

- ① 위의 2조건이 동시에 만족시켜지지 않는 경우
- ②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로서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이다. → 따로 분류

통칙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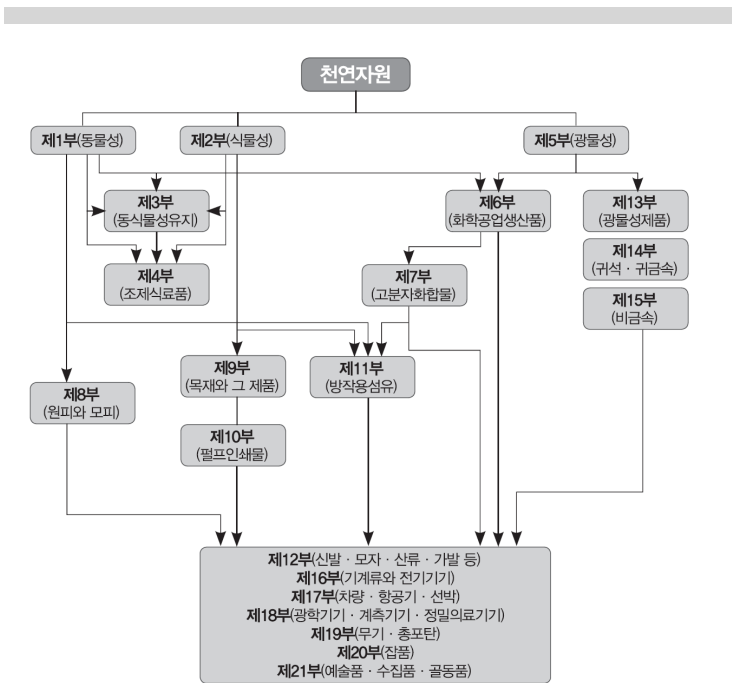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소호 즉 5단위와 6단위의 분류에 관한 것이다. 동일한 수준의 소호와 함은 5단위소로 상호간 6단위 소호 상호간을 뜻하지 5단위와 6단위간의 관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



3과목 원산지결정기준

01. 완전생산품

구분	종류	
1) 일반기준	가) 기본원칙	① 완전생산품
		② 불완전생산품 : 역내가공 원칙 → 충분가공 원칙
		③ 원산지재료 생산품
		④ 직접운송 원칙
	나) 분야별특례	⑤ 누적기준 / 최소허용기준 / 중간재
		⑥ 대체가능물품 / 간접재료
		⑦ 부속품·예비품 / 포장·용기
		⑧ 세트물품
2) 품목별 기준	다) 개별기준	⑨ 세번변경기준
		⑩ 가공공정기준
		⑪ 부가가치기준

02. 불완전생산품 역내가공 원칙 + 충분가공 원칙

03. 원산지 재료 생산품

- 1) 원산지 재료 : 협정 규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부여받은 재료
- 2) 원산지 재료 생산품 : 원산지 재료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역내에서 전적으로 생산한 상품

04. 직접운송 원칙 수출당사국에서 출발하여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를 제공한다

- 1) 직접운송 요건 규정(유럽형)
 - 미주형을 제외한 협정에 해당되며, 직접운송 요건과 비당사국 경우 한도를 함께 규정
- 2) 경우 요건 규정(미주형)
 - 한 - 칠레, 한 - 미국, 한 - 캐나다 FTA에서는 경우 요건만 두어 유럽형보다 운송요건 완화

05. 누적기준 / 최소허용기준 / 중간재

- 1) 누적기준(재료누적:ALL / 공정누적:칠레, 싱가포르, 페루,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 물품의 최종 생산자가 국내산이 아닌 FTA 상대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한 경우, 그 원재료를 국산재료(원산지 재료)로 간주하여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
- 2) 최소허용기준(일반10%, 칠레8%)
 - 제품 생산과정에 사용된 재료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한 재료가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그 재료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제도
- 3) 중간재(*중간재 지정사무 : 칠레, 싱가포르)
 - 최종물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제품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로서, 해당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면, 그에 포함된 비원산지재료를 고려하지 않고, 그 전체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특례

06. 대체가능물품 / 간접재료

- 1) 대체가능물품(Fungible goods)
 - 상업적으로 호환가능하고 특성이 동일한 상품(예 : 곡물, 과일, 석탄, 볼트, 타이어 등)을 실제로 동일한 물품으로 간주하여 원산지/비원산지를 결정하게 하는 특례
- 2) 간접재료(indirect materials)
 - 제품의 생산 및 검사 과정에 사용되지만, 그 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재료 또는 설비나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물품을 말함

07. 부속품·예비품 / 포장·용기

- 1)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 어떤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 물품을 구성하는 구성품(원재료, 부품 등) 각각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함 → 그러나, 부속품·예비부품·공구의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 본체의 원산지를 결정함
- 2) 소매용·수송용 포장 및 용기
 - 상품의 원산지 결정시, 악기나 면도기 케이스 등 소매용 포장 및 용기는 제외하고, 내용물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예외 인정

08. 세트물품

- 1) 서로 다른 성질의 물품을 특정목적을 위해 하나로 조합한 것 → 구성품별로 원산지 결정하는 것이 원칙
- 2) 세트 구성품 중 비원산지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 그 세트 구성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간주하는 예외 인정

09.세번변경기준 CC Rule / CTH Rule / CTSB Rule

10. 가공공정기준

- Yarn-Forward : 칠레, 페루, 콜롬비아, 미국, 중미
- 오른쪽으로 갈수록 충족기준이 엄격해짐



11. 부가가치기준

아세안, 칠레, 페루, 호주, 베트남, 뉴질랜드, 중미	미국, 콜롬비아	EU, EFTA, 영국, 튀르키예, 캐나다, 이스라엘	인도, 중국, 싱가포르
공제 / 집적	공제 / 집적 / 순원가	MC	공제